

# 우체국 e-공동구매 정기예금 특약

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e-공동구매정기예금’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거치식예금 약관’,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, ‘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’, ‘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’, ‘조세특례제한법·동 시행령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.

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

## 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-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.
-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.

## 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9개월, 12개월, 24개월, 36개월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6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.

## 제7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.
  - 1. 인터넷뱅킹우대이율 :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기간별 이율 적용
  - 2. 공동구매우대이율 : 판매기간 종료일까지 판매된 금액에 따라 차등이율 적용

(단위 : 연 %p, 세전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공동구매우대이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2,000억 미만             | 0.3      |
| 2,000억 이상 ~ 5,000억 미만 | 0.4      |
| 5,000억 이상             | 0.5      |

※ 판매금액별 확정이율은 판매기간 종료일 다음 날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-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

**제8조 【이율적용방식】**

-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판매기간 종료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.
  - 1. 「인터넷뱅킹우대이율」은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.
  - 2. 「공동구매우대이율」은 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에 따라 적용한다.

**제9조 【이자계산】**

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(예치일수/365)을 곱하여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
**제10조 【이자지급방식】**

-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(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. (직전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, 인터넷·스마트뱅킹에서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)
  - ※ 단,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**제11조 【중도해지】**

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**제12조 【만기후해지】**

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.

**제13조 【분할해지】**

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.

**제14조 【과세구분】**

이 예금은 일반과세,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.

**제15조 【기타】**

-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.
- ② 이 예금의 판매기간은 2021. 12. 14. ~ 2022. 2. 28. 까지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특약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특약은 2022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